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37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윤준병·박희승·정동영

허 영 · 허종식 · 서영교

박민규 · 문대림 · 김태선

이춘석 · 조계원 · 민형배

이원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제1항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30조,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4,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행령 제30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7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 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은 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적법한 소지인 추정'및 '제3자 대항'에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의 입증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법률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지난 2016년 우선출자 관련 규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하향 입법하였으나, 이후 '우선출자의 양도' 규정에 대한 개정이 없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조합 관련 다른 법령의 경우 '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적 균형을 고려하여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7조제1항 중 "잉여금 배당에서"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우선출자에 대하여"를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5장제6절에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에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둔다.
 -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제147조(우선출자) 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 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 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입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있다. 다른 종류의-----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신 설>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 ④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 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 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 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 한다. 자"라 <u>한다)</u>-----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삭 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 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신 설></u>

<신 설>

<신 설>

-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 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 행하여야 한다.
-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 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 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 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 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 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 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신 설>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 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 회에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 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총 출소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선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 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 모집・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